
참고자료

1. 피해사례

□ 제3자로의 기술자료 유출 사례

- 2015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I사는 공기업 L사의 하도급계약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를 진행하였으나, L사는 시스템 개선을 위한 추가용역을 발주하였고 경쟁업체인 N사가 수주함
- I사는 L사의 정식서면을 통한 소스코드 요구 시 이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L사는 복제프로그램을 통해 I사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탈취함
- I사는 N사가 L사로부터 자사의 소스코드를 받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제3자로의 기술자료 유출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민사 소송 중에 있음

□ 기술거래계약 전 기술자료 유출 사례

- 지하 주차장 환기설비업체 H사는 대기업 P사의 기술협력사인 G사로부터 신축건물의 환기설비 설계 의뢰를 요청받아 정식 기술거래계약 체결 없이 상세도면, 견적 등을 포함한 기술자료를 제출함
- 이후 P사 주관의 입찰 선정평가에서 H사가 제공한 기술자료가 경쟁업체인 S사에서 활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평가결과 H사는 입찰에서 제외되어 P사와 G사의 기술자료 유출 행위와 관련 분쟁 중

□ 품질관리, 검사 등을 목적으로 기술자료 요구 사례

- 대기업 H사는 제품 경쟁력, 품질확보의 명목으로 부품협력사 S사에 제조공정도, 작업 표준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함
- H사의 제품양산 취소가 두려워, S사는 H사로 각종 기술자료를 제공하였으나, H사는 S사의 자료를 C사로 유출하여 양산하였고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S사는 경찰청 등에 신고하여 조사 중

2. 개정안 주요내용

가. (기술유용 행위 정의)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기술 유용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1.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11. (개정안과 같음)</p> <p>12. <u>“기술 유용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u></p> <p><u>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된 기술자료(이하 “유용금지 기술자료”라 한다)를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u></p> <p><u>나. 유용금지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u></p>
<p>제25조(준수사항 ①~②) (생략)</p> <p><u><신설></u></p>	<p>제25조(준수사항) ①~② (생략)</p> <p><u>③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대하여 기술 유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나. (비밀유지협약)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유용대상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비밀유지협약서를 마련·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21조의2(비밀유지협약의 체결)</u></p> <p><u>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유용금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유용금지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유용금지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u></p> <p><u>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비밀유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u></p>
<p>제25조(준수사항 ① (생략))</p> <p><u>②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수탁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업은 취득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권원(權原)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제25조(준수사항) ① (생략)</p> <p><u>②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수탁기업에 유용금지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유용금지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및 해당 임직원의 수탁기업에 대한 비밀유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약정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 주어야 한다.</u></p>

다. (입증책임 분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유용대상 기술자료를 제공한 사실과 수탁·위탁거래 중이거나 종료된 후 위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대상이었던 물품등과 유사한 물품 등을 제조한 사실 등을 입증한 경우 기술 유용 행위의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되, 중소기업간 수탁·위탁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25조의2 제2항 및 제3항).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p> <p><u><신 설></u></p>	<p>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p> <p>① ----- ----- ----- -----.</p> <p>② 제25조제3항의 행위와 관련된 분쟁해결에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수탁·위탁거래의 대상인 물품등에 관한 유용금지 기술자료를 제공한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기술 유용 행위의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p> <p>1. 수탁·위탁거래 중이거나 종료된 이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을 배제하고 수탁·위탁거래에서 정하거나 예정하였던 다른 거래처와 수탁·위탁거래 대상</p>

<p><신 설></p>	<p><u>이었던 물품등에 관한 거래를 한 사실</u></p> <p>2. <u>수탁·위탁거래 중이거나 종료된 이후 위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대상이었던 물품등과 유사한 물품등을 제조하거나 제3자에게 제조위탁을 한 사실</u></p> <p>③ <u>제2항은 중소기업 간 수탁·위탁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p>
--------------------	---

라. (주기적 조사) 기술 유용 행위 등에 대한 주기적 조사 후 개선을 요구한 경우 해당 기업이 **이행기간 내에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쟁조정요청이 있는 것으로 봄(안 제27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p>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u>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의 규정 또는 제25조제1항을</u>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u>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u></p>	<p>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 ① ----- ----- ----- ----- <u>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의 규정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u> ----- ----- ----- -----<u>요구하여야</u></p>

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한다. 해당 기업이 이행기간 내에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요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	---

마. (손해배상제) 위탁기업이 기술 유용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40조의2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생략)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4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4호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과태료) 유용대상 기술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유용대상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43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설>

<신설>

2. (생략)

③·④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
유지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에 따른 서면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현행 제2호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